

SKOM 회원학회 인준 신청 안내

-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와 예비회원학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 회원학회는 아래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학회 심사평가위원회의 인준심사 및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를 말합니다.
-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학회는 본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예비회원학회로 활동 가능한 기간은 3년입니다.
- 예비회원학회가 기존 회원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목적의 회원학회가 있을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로 회원학회 인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예비회원학회로서 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한 후 인준을 득하지 못한 경우,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인준**에서 탈락하거나 전항에서 정하는 심사신청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준 또는 재인준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는 예비회원학회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다만, 예비회원학회의 등록이 취소된 그 학술단체가 동일한 목적과 취지로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이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학회 인준 신청 ■

가. 신청자격 : 예비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

나. 가. 항에 해당되는 예비회원학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준 신청

1. 인준신청서(서식1)
2. 정관 또는 회칙
3. 학회 현황(서식2)
4. 회원 현황(서식3)
5.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서식4)
6.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서식5)
7. 최근 1년 동안 발행한 학회지 1부(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

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8. 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다. 회원학회 회칙 :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 사항 명시

1.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4.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라. 회원학회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1. 관련분야 교수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2.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다만,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3. 학회지를 미발행 회원학회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 가능
4. 회원학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소속 회원의 본회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수납 업무에 적극 협조

- 회원학회 인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www.skom.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분담금 납부계좌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1-910008-24904 대한한의학회(예금주)
 - 입금자명 : 학회명 또는 대표자명
- 문의처 : 임현경 담당 (전화 : 02-2658-3627, e-mail : skom1953@daum.net)

※ 인준 관련 모든 서식은 본 학회 홈페이지
www.skom.or.kr 에서 다운로드